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여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나. 그간 의료인력정책과에 소관이었던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의료인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조산사)에 따라 업무 소관을 구분하여 의료인 면허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하여 소수직렬 보호 및 조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제11조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개정 및 별표2·별표2의2·별표10 개정)

나. 의료인력정책과 소관 업무인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의사(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한약정책과), 치과 의사(구강정책과)로 직종별 업무 소관 구분(제11조 제8항 제6호 개정, 제11조 제18항 제9호 신설 및 제13조 제7항 제13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 추가(별표2·별표2의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4. 26. ~ 4. 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본문 중 “의료기관정책과”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6호 중 “의료인”을 “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8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7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치과 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849”를 “852”로 하고, 일반직 계 “840”을 “84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8”을 “5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6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

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7”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76”을 삭제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3”을
 “6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51”을 “854”로 하고, 일반직 계 “842”를 “84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8”을 “5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6 다음에 “행정
 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
 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7”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76”을 삭제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3”을
 “64”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조직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2년 5
 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3명 (4급1, 5급1, 6급1)	<u>2023년12월31일까지</u>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 자원정책과, <u>의료기관정책과</u> ,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 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 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 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 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 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 ----- ----- <u>간호정책과, 의료기 관정책과</u>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⑧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의료인</u> 의 보수교육, 면허 신 고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 항	6. <u>의사</u> ----- -----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u>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u>

⑩ · ⑪ (생략)

⑬ ~ ⑰ (생략)

⑱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⑲ (생략)

분장한다.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 ·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⑬ ~ ⑰ (현행과 같음)

⑱-----
-----.

1. ~ 8. (현행과 같음)

9. 한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⑲ (현행과 같음)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⑥ (생략)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신설></u> ⑧ ~ ⑩ (생략)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치과 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⑧ ~ ⑩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계	.		.		.				
			<u>849</u>		<u>852</u>			+3	
	.		.		.				
	.		.		.				
	.		.		.				
	.		.		.				
	.		.		.				
	.		.		.				
<u>일반직 계</u>			<u>840</u>		<u>843</u>			<u>+3</u>	
.			.		.				
.			.		.				
.			.		.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8</u>		<u>59</u>			<u>+1</u>	
.			.		.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276</u>	<u><삭 제></u>	<u>△276</u>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 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 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u><신 설></u>	<u>277</u>	<u>+277</u>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63</u>	<u>64</u>	<u>+1</u>
·	·	·	
·	·	·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851</u>		<u>854</u>		+3
	.		.		.		
	.		.		.		
	.		.		.		
	.		.		.		
	.		.		.		
	.		.		.		
<u>일반직 계</u>			<u>842</u>		<u>845</u>		<u>+3</u>
.			.		.		
.			.		.		
.			.		.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8</u>		<u>59</u>		<u>+1</u>
.			.		.		
.			.		.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전산사무관· 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276</u>	<u><삭 제></u>	<u>△276</u>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전산사무관· 약 무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 사무관·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u><신 설></u>	<u>277</u>	<u>+277</u>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 · 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63</u>	<u>64</u>	<u>+1</u>
·	·	·	
·	·	·	

[별표 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제1항 관련)

1.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5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2)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u>2022년 5월 31일까지</u>
3)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2년 1월 31일까지
5)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3년 3월 31일까지
6)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3년 3월 31일까지
7)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5명 (4급1, 5급2, 6급1,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8) 보건의료정책실 혈액장기정책과	3명 (4급1, 5급1,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9) 건강정책국 정신건강관리과	4명 (4급1, 5급1, 6급1,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10)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9명 (4급1, 5급5, 6급2,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11) 보건산업정책국 재생의료정책과	6명 (4급1, 5급2, 6급1, 7급2)	2023년 3월 31일까지
<u>12)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u>	<u>3명</u> <u>(4급1, 5급1, 6급1)</u>	<u>2023년12월31일까지</u>